

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·양수(승계)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
신고구분	※ 해당 항목에 √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	
	[]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양도신고	
	[]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양도신고	
	[]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승계신고	
면허관계	면허대상자의 주소, 법인명	
	위치	
	매립목적	
	면적	
	공사기간	
양도·양수(승계)관계	면허대상자	
	양수인(승계인)	
	양도·양수(승계) 사유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 및 제4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·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(매립면허관청) 귀하

※ 이 별지에서 "매립면허관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	수수료 없음
--	-----------

